

우루과이라운드(UR) 서비스協定과 立法的 對應方案

金哲三*

차례

I. 머리말

II. UR 서비스協定의 배경 및 追後展望

1. 協定背景
2. 몬트리올 閣僚會談 以後의 協商進展狀況
3. UR서비스協商의 追後展望

III. UR 서비스協定文의 內容

1. 定義 및 範圍: 제1부
2. 一般的 義務 및 規律: 제2부
3. 具體的 約束(Specific Commitment): 제3부
4. 漸進的 自由化(Progressive Liberalization): 제4부
5. 制度規定(Institutional Provisions): 제5부
6. 最終條項(Final Provisions): 제6부
7. 附屬書(Annexes)

IV. 讓許計劃書

1. 讓許計劃書의 記載內容
2. 業種의 區分方法
3. 서비스 供給方法에 대한 記載原則
4. 우리나라의 讓許內容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원, 경제학박사

V. 우리의 立法的 對應方案

1. 通信分野
2. 建設서비스分野
3. 韓美間 通商問題
4. 一般的인 對應의 原則

I. 머리말

현재 世界經濟는 UR協商의 妥結과 강력한 제재력을 지닌 새로운 世界貿易機構(WTO)의 출범으로 인하여 새로운 교역질서의 형성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이 自國의 利益만을 위하여 국내규제조치를 취한다거나 또는 위와 같은 새로운 교역질서와는 독립적으로 國內政策을 수행하는 것은 한계점에 달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93년말 UR의 타결시 새롭게 서비스協定文도 채택됨으로 인해 서비스부문에서도 예외가 아니게 되었다.

UR協定文에는 協定文이 서비스交易에 영향을 주는 會員國의 모든 조치에 적용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措置”라고 하는 것은 法, 規制, 規則, 節次, 決定, 行政的 行爲 등을 의미한다고 정의가 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취하여야 할 행동은 UR協定文에서 정의된 조치에 해당되는 현재 집행중인 모든 법 및 규제에 관한 정비가 될 것이다. 정비와 관련하여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두 가지 사항은 첫째, 현재 讓許計劃書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들과 국내의 제도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둘째로 차후 讓許內容이 점진적인 자유화의 확대에 따라 개정되어 나갈 것에 대비하여 국내의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讓許한 部門은 GATT事務局이 분류한 11개 서비스부문 중 8개 분야로서 事業서비스, 커뮤니케이션서비스, 建設서비스, 流通서비스, 環境서비스, 金融서비스, 觀光 및 旅行關聯서비스 그리고 運送서비스이다. 따라서 이들 8개 부문에 관련된 制度 및 慣行들을 UR協定文에 근거하여

재정비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당면한 과제이지만, 이때 이러한 作業에 있어서 추후 讓許協商의 진전상황에 따라 더욱 개선되고 보완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는 것도 또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UR協定文自體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本論文에서는 먼저 UR協定의 成立背景과 進展狀況을 정리해 본 후 추후의 UR협상과제를 전망해 본다. 그리고 UR협정문의 內容과 현재 우리나라가 제출한 讓許內容을 간단히 정리해 봄으로써 UR서비스시장개방의 국내산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또 UR협정의 내용에 따라 국내의 제도가 정비되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디 서비스시장의 규모 및 분야가 방대하고 복잡하므로 포괄적인 방향의 제시에 국한하되 제도정비에 대해서는 몇몇 서비스부문에 대한 예를 통해 논의를 이끌어 보고자 한다.

Ⅱ. UR 서비스協定의 背景 및 進後展望

1. 協定背景

제7차 GATT會談인 동경라운드 多者間協商이 끝난 1970년대 후반 이후 美國은 서비스交易의 自由化問題를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이즈음 실제로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따라 世界交易에서 서비스交易이 차지하는 비중은 實物交易의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증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서비스交易을 다룰 다자간 규범의 부재로 인한 국제간 분쟁의 여지도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美國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실물부문에 있어서보다 서비스부문에 있어서의 比較優位가 더 커지기 시작하여 국내 서비스산업을 보조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났기 때문이었다.

서비스交易에 대한 다자간 협상문제가 공식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82년 GATT閣僚會議에서 미국이 서비스交易問題를 위한 實務作業班(working party)을 설치하자고 공식적인 제안을 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당시 開途國들의 강력한 반대에 의해 미국의 제안은 무산되었으며 서비스 부문의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연구하자는 作業計劃(work program)에 대해서만 각국의 통상장관들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계획의 실질적 준비

는 1984년에 가서야 시작되었고 1986년에 17개 국과 13개 국제기관이 서비스交易에 관한 보고서를 GATT事務局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先進國들과 開途國들간의 의견차이로 뚜렷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다가 1986년 9월 푼타델 에스테에서의 우루과이라운드 출범시 이러한 견해들이 결충되어 개도국들이 협상에 참여함으로써 다자간 서비스협상이 정식으로 개시되었다.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협상개시였을 뿐 협상내용의 실질적인 진전은同年 12월 몬트리올 각료회의 이후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협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서비스交易에 관한 一般協定(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제정, 둘째는 一般協定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추가규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부속서(Sectoral Annex) 제정, 그리고 셋째로 위의 一般協定 및 부속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각國이 市場開放計劃을 확정하는 최초 자유화약속 (Initial Commitment) 확정을 위한 讓許協商이다.

2. 몬트리올 閣僚會談 以後의 協商進展狀況

다음의 圖表는 서비스協商의 실질적인 내용상의 진척이 있었던 1986년 12월의 몬트리올 閣僚會談 以後부터의 진전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年 度	主要 協商進展內容
198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차례에 걸친 서비스협상그룹(GNS) 개최 GATT事務局 4월에 서비스분류표 작성 GATT事務局 서비스협정의 構造 및 内容에 관한 각국의 書面提案과 討議過程에서 나온 主要內容들을 정리한 議長報告書(MTN.GNS/28) 작성
199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차례 公式 GNS회의 및 수차례의 非公式會議로 분야별 부속서를 포함한 일반협정의 초안작성에 노력 경주 분야별 부속서의 성격과 대상가능분야에 대한 합의 도출 서비스교역의 自由化推進方式에 대한 각국간의 현저한 입장 차이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NS事務局 7월에 서비스교역에 관한 一般協定草案(MTN.GNS/35)을 의장이 작성, 배포하여 각국이 조문별 검토에 들어감 • 12월초 벨기에 브랏셀에서 열린 閣僚會議에서 美國과 EC 등 주요협상국간의 주요쟁점들에 대한 첨예한 의견차이로 별 진전없이 끝남
199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랏셀회의 종료후, 서비스분야는 主要國들이 제출한 讓許計劃書를 놓고 주요국간에 양자간 협상이 전개됨 • 분야별 부속서 제정과 관련하여 브랏셀회의에서 상정된 9개 서비스분야에 대한 부속서 초안을 분야별 회의를 통해 보완·수정해 나감 • 12월까지 한국포함 43개국이 让許計劃書 提出. 주요국들은 상대국에 대한 開放要求書(request list)를 제출 • 그간의 진전상황을 바탕으로 서비스교역에 관한 一般協定最終案이 작성되어 12월 20일 둔켈 GATT사무총장이 貿易協商委員會(TNC)에 제출한 UR협상 最終協定條文(MTN.TNC/W/FA)에 포함됨
199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둔켈草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요국들은 서비스협상에서의 최초 자유화약속을 위한 让許協商을 계속 추진하여 수정·보완된 修正讓許計劃書들을 제출
199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둔켈草案을 계속 기술적으로 수정·보완하는 등의 실질적인 협상의 진전 이룩 • 주요국간에 꾸준한 최초 자유화약속을 위한 让許協商으로 7월 동경 4者會談 및 G-7頂上會談에 이르러 거의 마무리 단계 • 1993년 12월 15일, UR協商妥結이 선언되었으나, 서비스分野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협상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

3. UR서비스協商의 進後展望

지금까지 우리는 UR서비스協定의 背景을 살펴보고 協定妥結을 위한 協商의 진전상황 및 주요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그렇다면 이제 UR 협정은 종결된 것인가? 사실 서비스에 관한 協定內容은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며 GATT협정의 최종목표라 할 수 있는 시장의

완전한 개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各會員國들은 끊임없이 자국의 讓許計劃書들을 점진적인 자유화의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야 한다. 실제로 서비스 협상에 있어서는 지난 1993년 12월 15일 UR최종타결일을 앞두고 많은 협상과제를 남겨둔 채로 協定文을 확정한 관계로 各會員國들의 讓許計劃內容에 대한 지속적인 협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追後의 協商課題는 서비스協定에서 규정해 놓은 追後協商課題와 讓許協商에서 남겨진 과제라고 할 수가 있다. 서비스協定과 관련된 협상과제는 제6조 國內規制, 제10조 緊急輸入制限措置, 제13조 政府調達, 제15조 補助金에 대한 것들이다. 제10조에 따르면 緊急輸入制限措置에 관한 協商은 즉시 진행하되 그 협상결과는 MTO(현재 WTO)의 設立協定 發效日로부터 3년 내에 발효된다. 제13조에서는 政府調達에 관한 协商은 MTO設立協定 發效日로부터 2년내에 행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補助金에 관해서는 貿易歪曲效果를 피하기 위한 多者間 規律을 개발하기 위한 협상이 바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협상의 방법이나 추진일정에 관한 협상이 선행되어야 함을 제15조에 명시해 놓았다. 讓許協商의 다음 과제로서는 서비스공급과 관련된 自然人的 移動, 金融, 基本通信, 그리고 海運에 관한 것들이 있다.

III. UR 서비스協定文의 内容

1. 定義 및 範圍: 제1부

제1부에서는 本協定이 미치는 범위를 서비스交易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들의 조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비스 供給形態 및 서비스交易에 영향을 주는 會員國들의 措置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2. 一般的 義務 및 規律: 제2부

제2부는 제목이 언급하는 대로 會員國들이 지켜야 할 규칙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조항들의 내용을 소개한다.

(1) 最惠國待遇(Most-Favoured-Nation Treatment)

제2부 제2조는 最惠國待遇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어떠한 조치든 그 조치가 한 회원국의 서비스나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他회원국의 서비스나 서비스 공급자들에 비해 차별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즉 國家間의 無差別主義라고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일정 서비스부문에서의 開放政策을 수립할 때 정책부서나 당국은 그것이 全會員國들을 상대로 한 개방약속을 수립하는 것임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각 서비스부문의 특성에 따라 各會員國들의 해당산업 발전수준이나 국내시장 진출 시의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정책 수립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

(2) 公開主義(Transparency)

제2부 제3조는 公開主義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各會員國들이 협정운용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이나 國際協定들을 그 발효전까지 공표해야 하며, 각국의 구체적 약속에 따라 개방하기로 한 서비스交易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法律, 規程 또는 行政지침들의 새로운 도입이나 수정에 관하여 즉각적으로 그리고 적어도 1년에 한번 통보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입법과정 전반에 걸쳐 서비스交易에 영향을 주거나 UR協定 運用과의 연계관계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지금 현재 개방의 약속이 되어 있는 서비스部門이나 開放이 이루어질 부문에 있어서 규제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주체들은 UR협정의 내용이나 원칙들을 숙지하고 국내규제나 정책운용이 UR協定 運用과 어떠한 상충관계가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리하여 운용지침이나 법의 개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상충관계를 고려함으로써 적어도 정책의 변경이나 법 개정에 있어서 이러한 담당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국내의 규제 활동과 UR협정 운용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3) 國內規制(Domestic Regulation)

제2부 제6조는 會員國들의 국내규제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즉, 구체적 약속이 행해진 서비스분야에 있어서 서비스交易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

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서비스 공급자들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交易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인가가 필요한 경우 國內法과 規程에 의거해 완전하다고 생각되는 申請書의 제출 이후 합리적인 기간내에 신청자에게 결정사항들을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요청시 부당한 지연없이 그 신청의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는 또한 資格要件과 節次, 技術標準 및 許可要件와 관련된 조치들이 서비스교역상의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서비스이사회로 하여금 적절한 기구를 설치하여 필요한 원칙들을 제정하되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

- ① 서비스를 제공할 資格 및 能力과 같은 客觀的이고 明瞭한 기준에 기초
- ②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 ③ 許可節次의 경우 그 자체가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조치이어서는 안 된다.

또 구체적인 약속이 행해진 서비스부문에 있어서 각국은 그러한 약속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許可 및 資格要件 그리고 技術標準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제6조는 專門職 서비스와 관련하여 具體的인 약속이 행해진 서비스분야들에 있어서 다른 會員國 專門職業人们的 자격을 입증할 충분한 절차를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4) 認定(Recognition)

제2부 제7조는 會員國의 서비스공급자에 대한 認定制度의 運用規則들을 명시하고 있다. 즉, 認可나 免許, 證明의 適用에 대한 공평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인정의 공평한 적용을 위해 協定文은 同條 第4項에서 각 회원국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해 놓았다.

(5) 獨占 및 排他的 서비스供給者(Monopolies and Exclusive Service Suppliers)

제2부 제8조는 獨占의거나 實質的 競爭을 저해하는 배타적인 그리고 소수간의 경쟁적인 상황하에 있는 서비스供給者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협

정의 기본적인 목표인 공평한 거래와 또한 각국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약속된 사항들에 위배되는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6) 緊急輸入制限措置(Emergency Safeguard Measures)

제2부 제10조는 緊急輸入制限措置 問題에 관한 다자간협상이 있어야 한다는 정도의 규정만 하고 있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한 協商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구체적 協商案을 도출할 수 없는 한계성을 露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具體的 約束 (Specific Commitment): 제3부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로 구성되어 있는 제3부는 서비스交易의 자유화에 대한 會員國의 具體的 約束을 규정하고 있다.

(1) 市場接近 (Market Access): 제16조

이 條項은 各會員國이 他會員國들의 국내시장접근에 있어서 讓許計劃書에 명시한 사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讓許計劃書에 명시되지 않는 한 취해질 수 없는 조치들의 성격을 명시하고 있다.

(2) 內國民待遇(National Treatment): 제17조

이 條項은 讓許計劃書에 별도로 명기되지 않는 한 他會員國들의 서비스나 서비스供給者에 대해 자국의 서비스나 서비스供給者들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4. 漸進的 自由化(Progressive Liberalization): 제4부

제4부는 추후의 讓許內容들이 점진적인 자유화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점진적인 자유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양허표의 기재내용 및 양허표의 수정원칙을 담고 있다.

5. 制度規定(Institutional Provisions): 제5부

제5부에서는 協議, 紛爭解決과 施行, 서비스 理事會의 機能, 技術協力 및 GATT總會와 他國際機構와의 關係 등을 명시하고 있다.

6. 最終條項(Final Provisions): 제6부

제6부에서는 UR協定의 혜택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과 主要 用語들의 개념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다.

7. 附屬書(Annexes)

協定文 마지막 부분은 6개의 附屬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2조, 즉 최혜국 대우의 면제에 관한 것, 協定文 하에서의 서비스공급 자연인의 이동, 금융서비스, 통신, 항공운항서비스, 기본통신에 관한 협상 등에 관한 것들이다.

IV. 讓許計劃書

UR서비스協定文에는 各會員國이 구체적인 市場開放의 약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약속은 추후 동 協定文의 일부를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즉, UR協定文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서비스交易에 영향을 주는 조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칙을 담고 있는 條項들(前章에서 소개)과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부분에 어떤 업종을 개방할 것인가를 회원국간의 협상을 통하여 확정짓는 讓許計劃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도 協定文에 규정되어 있는 방식에 따라 讓許計劃書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위해 주요 협상국들과의 협상을 거쳐 11개 부문 155개 업종 중에 8개 부문 78개 업종을 시장개방 약속업종으로 讓許計劃書에 발표하였다. 讓許計劃書와 관련되는 協定文상의 조항들로서는 제16조 市場接近, 제17조 内

國民待遇, 제18조 追加的 自由化 約束 등이며 最惠國待遇義務 免除條項은 부속서에 별도로 나와 있는 것으로서 讓許計劃書와 관련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다.

1. 讓許計劃書의 記載內容

讓許計劃書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UR協定文 제20조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市場接近에 대한 制限 및 條件, 內國民待遇에 대한 制限 및 條件, 추 가적 약속과 관련된 조치들 및 적절한 경우에 그러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일정 등이다. 우리나라의 讓許計劃書를 살펴보면 페이지당 4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째 행에는 개방업종, 둘째에는 시장개방에 대한 제한, 셋째에는 內國民待遇에 대한 제한, 마지막 행에는 추가약속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첫째 행의 開放業種은 positive방식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개방하는 업종만 명시하는 것으로서 명시된 업종외에는 개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행의 시장개방에 대한 제한은 이와는 반대로 negative방식이며 이는 제한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기재되지 않은 것은 어떠한 제한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됨을 말한다. 市場開放에 대한 제한조건은 UR協定條文의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 합당하게 기재되어야 하는데 6가지 조건중에 5개의 조건은 수량제한적 최대치를 설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양허표상의 프랜차이징업종의 경우,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에 대한 제한조건으로 합작투자 및 100% 외국인투자의 경우는 1개사당 매장면적 3,000 제곱미터미만이어야 하고 20개 점포까지만 허용된다.

셋째 행에는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조건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GATT 一般協定文과는 달리 內國民待遇에 대한 원칙이 UR서비스協定에서는 제2부 일반적 의무 및 규율에 들어 있지 않고 제3부인 讓許計劃書 부분에 들어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간접적으로 內國民待遇原則이 서비스협정에서는 일반적인 의무로 규정지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님을 말해 준다고 하겠다. 즉, 내국민에게 적용되는 국내의 규제 중 많은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서비스공급자에게나 공급기관에게 차별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전적인 거주요건이 요구되어지는 경우

외국인 서비스供給者는 사전적으로 국내에 거주한 것이 아니므로 이것이 차별적인 요건이 됨이 당연하다.

넷째 행에는 positive방식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자유화약속의 내용을 기재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난에 아무런 사항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제16조 市場接近이나 제17조 內國民待遇에 관한 사항은 이 난에 기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상으로 볼 때 첫째 행과 넷째 행만 positive방식이며 둘째와 셋째는 negative방식임을 알 수가 있는데, 둘째와 셋째의 경우 실제로 제한사항이 너무 많을 경우 이를 다 기재할 수가 없으므로 'unbound except for'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한정된 조치만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기재할 수가 있다.

2. 業種의 區分方法

讓許計劃書上에 기재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다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業種區分方式으로 MTN.GNS/W/120을 따르도록 하였으나 이보다 자세한 분류가 요구되어질 경우에는 UN의 CPC(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 분류방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도 해당되지 않는 분류가 필요할 경우 업종위에 *(asterisk)표시를 하여 해당업종의 정의를 별도로 추가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3. 서비스 供給方法에 대한 記載原則

서비스供給方法에 대한 記載는 UR協定文 제1조 2항에서 언급된 대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즉, 특정한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제1조 2항에 나온 서비스공급방법이 중복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의 공급방법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협정에 정의된 4가지 방법에 따라 분류, 기재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전문직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의 내용이 우편으로 國際間 移動이 가능할 경우에 이는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방법에 해당되나, 전문인이 입국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자연인의 駐在에 해당되는 공급형태이므로 양자에 대한 제한조치가 별도로 명시되어야 한다. 위의 경우

중 한 가지만 명시했을 경우에는 다른 한 가지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경우로 간주된다고 볼 수가 있다.

4. 우리나라의 讓許內容

우리나라는 11개부문 155개 業種中에서 教育, 保健·社會, 文化·娛樂의 3개 부문을 제외한 8개 부문 78개 업종을 讓許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UR협상타결일인 93년 12월 15일까지 讓許計劃書 확정을 위하여 주요협상국들과의 협상을 마무리지어 대체적인 의견 해소를 보고 위와 같은 讓許計劃書를 완료하였으나,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美國과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협상과제로 넘기게 되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追後協商의 妥結時日은 1995년 10월(UR협정발효일이 1995년 7월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발효후 4개월까지로 합의)까지로 잠정적인 합의를 보았다.

현재 讓許計劃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은 이미 外國人投資가 自由化되어 있거나 금융자율화 정책에 관련된 Blue Print상에 나와 있는 것들 중의 일부를 양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추가적인 금융시장개방의 약속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讓許水準과 他國의 것들을 비교한 圖表를 인용한 것이다.

	한국	미국	EC	일본	캐나다	중국	태국
1. 사업서비스(46)	31	34	41	32	35	21	19
2. 통신서비스(24)	9	15	13	15	8	-	5
3. 건설(5)	5	5	5	5	5	5	3
4. 유통(5)	4	4	4	4	5	-	1
5. 교육(5)	-	2	4	4	-	-	-
6. 환경(4)	3	4	3	4	4	-	-
7. 금융(17)	15	16	16	16	16	12	13
8. 보건, 사회서비스(4)	-	4	2	2	-	-	-
9. 관광(4)	3	4	2	3	2	1	2
10. 문화, 오락, 스포츠(5)	-	4	3	4	-	-	1

11. 운송(35)	8	15	17	16	20	7	11
12. 기타(1)	-	-	-	-	-	-	-
계(155)	78	107	110	105	95	46	55

註: 'UR總點檢',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12. 引用

圖表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의 讓許內容은 開放의 업종수에서도 대부분 先進國들 수준에 못미칠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도 이들에 비해 많은 제한사항들을 달고 있다.

V. 우리의 立法的 對應方案

UR協定文은 多者間에 지키기로 약속한 규범이며 이에 따라 작성된 구체적인 약속의 내용이 讓許計劃表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범에 위배되는 모든 조치는 곧 通商摩擦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된다. UR 서비스協定文에서 다루어지는 조치는 서비스交易에 영향을 주는 法, 規制, 規則, 節次, 決定, 行政活動 등이다. 즉, 서비스교역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제도 및 관행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입법적인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制度의 整備와 改善에 의해서 通商摩擦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UR서비스協定이 우리와 중요한 연관을 갖는 요소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첫째 UR協定文의 일반적 의무와 규율을 들 수가 있다. 둘째 讓許計劃書가 있고, 셋째 현재 서비스交易에 영향을 줄 우리의 制度나 價行이 있다. 이 삼자는 서로가 일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일치관계 만이 현재나 향후의 通商摩擦을 줄이고 보다 더 효율적이고 자유로운 서비스 교역을 가져다 준다. 또한 추후협상과제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시간이라는 차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삼자간의 구조 또한 시간에 따라, 즉 追後協商이 진전됨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問題意識들을 가져볼 수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제도는 서비스협정의 일반적인 義務 및 規律에 일치하여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의 讓許計劃書와 현재의 우리나라 制度가 일치

하여야 한다. 셋째, 讓許計劃書는 일반적인 義務 및 規律에 일치하여야 한다. 넷째, 향후의 협상전망에 따라 우리나라의 제도는 어떻게 보완이 되어 져야 할 것인가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실제로 관련된 法令이나 制度 등에 어떠한 修正 또는 補完을 가하도록 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방대하고 어려운 작업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나 정책담당 또는 집행자들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 내지는 방향을 가지고 이러한 분석작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나 대응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매우 규모가 큰 작업이며 포괄적인 반면 該當 部門이나 業種別로 볼 때는 세밀하고도 技術的인 努力이 요구된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한 예들을 통해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通信分野

우리나라는 90년 7월 通信事業에 부분적 경쟁을 도입, 民間企業의 參與를 조성하는 通信業 構造調整案을 발표, 91년 12월 국제전화 複占체제를 구축, 93년 8월 paging사업의 複占체제를 도입하였고, 94년 상반기 말까지 cellular서비스분야 複占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基本通信分野의 競爭力 強化를 위한 지속적인 構造調整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多者間 基本通信協商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外國事業者에 대한 進入障壁 除去와 營業規制 緩和인데 전자의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은 外國事業者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본통신 특정분야에 대한 시장접근보장요구 (예로 특정서비스분야에 대한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제도적 진입장벽 제거 및 100% 외자투자 요구)와 서비스 제공방식에 대한 제도철폐(기준설비를 제공받거나 外國事業者가 새로 설비를 구축하는데 제한이 없을 것을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外國事業者에 대한 市場進入障壁이 緩和 또는 撤廢된다 하더라도 영업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시장접근이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內國民待遇次元 또는 그 水準을 넘어서는 선까지도 영업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이는 新規事業者에 대한 요금결정의 자율권이나 원가에 기초한 접속료 산정 및 공정하고 무차별적이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업자간의 접속협정체결을 보장하는 것 등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協商이 진척되어 外國事業者의 國內市場進出이 이루어 질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國內產業의 競爭力이라 할 수가 있는데 주로 회선재판매서비스, 국제전화서비스, 신규이동통신서비스, 장거리전화서비스 산업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분야에서의 國內事業者들의 競爭力이 열세인 이유는 사업자 자신의 문제라기 보다는 政府의 規制政策效果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물가 안정차원에서 전화요금을 관리하여 사업자가 요금을 원가에 기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전화요금 引上抑制를 위해 인위적이며 제도적으로 서비스 구간간에 相互補助金을 발생시켜 장거리나 국제전화시장에만 진입하려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둘째, 현재 시행중인 구분이 一般通信事業과 特定通信事業이라는 인위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모든 신규서비스에 대해 어떤 사업자가 언제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는 positive-listing방식은 현재 신규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여건이 충족됨에도 사업의 지연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가 조기에 제공되어 경쟁력이 축적되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결정과정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정과정 등의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국내 기본통신산업의 경험을 축적케 하고 현재의 國內 基本通信產業의 構造調整作業을 시작하여 국내사업자간의 경쟁구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대외개방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國內事業者들이 기본통신서비스에 있어서 상대적인 경쟁력 열세를 겪는 가장 큰 요인이 과도한 진입제한과 과도한 영업규제에 있다고 볼 때 이를 완화 내지 철폐해야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 중의 하나로서 negative listing방식을 도입하여 民間企業의 通信事業參與 기회를 늘리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볼 때 이러한 規制緩和의 초점은 사업자 수의 제한이라든가 관리적 차원의 가격차 설정 등이 아닌 공정하고 효율적인 競爭環境의 조성이라는 데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國內產業의 競爭力 提高를 위해 規制緩和 및 構造調整을 위한 제도정비에 힘쓰는 반면, 外國事業者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대로 단계적으로 시장진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국내의 경

쟁구도가 정착된 후라면 요금구조도 원가에 근접되어 있어서 外國事業者의 국내진입요인도 약해질 것이며, 국내에서의 경쟁구도 정착이후 경쟁을 통하여 생존한 기업들은 경쟁력면에 있어서 外國事業者들과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2. 建設서비스分野

먼저 우리나라의 양허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建設서비스 양허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건설(*)	전문건설(**)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사항	1) 국경간 공급: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Unbound로 함(단 CPU 5111(택지조사업)은 제한없음) 2) 해외소비: 없음 3) 상업적 주재: - 지사는 허용되지 않음 96.1.1부터 지사가 허용됨 - 면허가 1년마다 발급됨 - 단일계약의 도급한도가 있음 - 하도급 의무제도가 있음 4) 자연인의 주재: 양허업종 전분야에 기재된 것 이외에는 Unbound	1) 국경간 공급: Unbound 2) 해외소비: 없음 3) 상업적 주재: - 국내 기존면허업체와의 합작 투자만 허용됨(100%외국인 투자회사는 96.1.1부터 허용, 지사는 98.1.1부터 허용) - 면허는 1년마다 발급됨 - 단일계약의 도급한도제도 있음 4) 자연인의 주재: 없음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사항	1) 국경간 공급: Unbound(단, CPU상의 5111은 제한없음) 2) 해외소비: 없음 3) 상업적 주재: 없음 4) 자연인의 주재: 없음	1) 국경간 공급: Unbound 2) 해외소비: 없음 3) 상업적 주재: 없음 4) 자연인의 주재: 없음
추가적 자유화 약속	-	-

*: CPC code상 5111, 5112, 5113, 5115, 5116, 512, 5131, 5132, 5133, 5136
(발전시설공사제외), 5137, 5139만 양허

**: CPC code상 5134, 5135, 5136(이 중 발전시설공사), 514, 515, 516, 517만
양허

양허표에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현재 支社가 허용되지 않는다고는 하나 기술적으로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여 建設業에 종사하는 外國人企業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를 위한 제도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建設業에 있어서의 건설계약은 대체로 2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발주인이 업자에게 직접 의뢰하는 방식과 입찰에 의한 방식이 있다. 하지만 발주인의 입장에서는 입찰방식을 통한 경쟁에 의하여 가장 낮은 비용의 건설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입찰방식이 주종을 이룬다고 할 수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법적으로 2가지 入札方式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100억 미만의 건설규모인 경우는 85% 直上位制度가 적용되며 100억 이상의 규모에는 最低價入札制가 적용이 된다.

(1) 入札制度의 改善 必要性

85% 直上位制度란 간단히 말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100억규모의 공사가 있다고 할 때 政府投資機關長들이 예정가격을 정하고 이에 85%를 곱한 가격 이상으로 입찰가격을 내놓은 建設業者 중에 제일 낮은 가격으로 내놓은 업자에게 공사가 맡겨지는 방식이다. 最低價入札制란 100억 이상의 공사의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서 가장 낮은 가격에 입찰에 응한 업자에게 공사가 맡겨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양허표상으로 자연인의 주재에 있어서 讓許內容이 簡單 노동력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의 簡單 노동력에 의한 경쟁은 현재로 볼 때는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는 반면, 工法에 있어서는 상당한 열위에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組立式工法의 경우 先進國들은 이미 이를 사용하여 공사해 왔던 경험을 토대로 상당한 기술이 축적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공법에 의한 建設工事が 공사기간에 있어서만 우위에 있을 뿐 노동집약적인 공사에 비하여 비용이 높아 현실적으로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은 아니다.

業界에 종사하고 있는 事業者들의 分析에 의하면 현재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100억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한 最低價入札制가 지속적으로 적용이 되면 外國人事業者들에게 거의 모든 공사를 빼앗길 우려가 있다고 한다. 즉, 위에서 설명한 바대로 공법에 있어서의 技術隔差가 심하여 外國人事業者들의 경우 國內事業者들에 비하여 매우 낮은 공사비용을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0억 이상의 공사의 경우 거의 모든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最低價入札制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경쟁적인 제도라고 할 수는 있으나 국내사업자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96년부터 일반건설의 경우 支社設立이 가능해지고 外國人投資가 개방이 되기 시작하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적절한 제도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가 있다.

(2) 建設控除組合

현재 建設業界에는 建設控除組合이라는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一般建設業者들외에도 건설관련 하청업자들까지도 그 조합원이 되어 다소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組合內에 구좌가 있어 이 구좌에 일정액을 불입한 조합원들에게는 一般貸出金利보다 저렴한 이자비용으로 대출이 가능토록 해준다든지 조합원들끼리의 연대보증제도라든지 하는 것이 그것이다.

UR협정에서는 內國民待遇가 實質的이고 效率的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는 內國民待遇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내의 어떤 제도나 관행이 실질적인 차별효과를 가져올 때 이를 內國民待遇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위와 같은 조합의 혜택이 外國人事業者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된다면(왜냐하면 外國人事業者들의 조합가입이 제한된다든지 외국기업에 대한 신용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연대보증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든지 할 가능성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國際間 通商摩擦의 요인이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慣行이나 制度 등의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通商摩擦의 要因化가 되기 이전에 기술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3) UR政府調達協商

建設서비스의 경우 현재로 볼 때 政府調達部門에 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外國人事業者들의 시장진입을 제한할 수가 있다. 즉, 커다란 공사의 경우 정부의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앞서의 최저가입찰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政府調達部門에 속하고 또 政府調達에 관한 協商이 MTO설립협정 발효후 2년(95년 1월이라고 가정할 경우 96년 말까지)내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3. 韓美間 通商問題

UR協定이 多者間의 規範이라고 하더라도 쟁무적인 협상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 UR협정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 첫째, 어떠한 쟁무적인 협상결과는 반드시 서비스理事會에 통보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公開主義에 입각한 협상결과는 향후 WTO(世界貿易機構)의 회원국 모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두나라간의 쟁무적 협상결과가 他회원국들의 서비스교역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준다고 할 경우 該當協定國들은 他관심회원국에게 협상이나 협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 놓아야 한다. 둘째, 最惠國待遇原則에 의하여 어떠한 협정에서 비롯되는 조치가 最惠國待遇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조치들은 곧 他 회원국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쟁무적인 통상문제는 이러한 UR協定과의 연관성을 반드시 고려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一例로서 韓美間의 經濟協議채널인 DEC(Dialogue for Economic Cooperation)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관련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의 景品制度

韓美間 通商問題에서 美國側이 주장하고 있는 한 예로서 우리나라에서의 경품제도에 대한 규제를 들 수가 있다. 요지는 우리나라가 경품제도에 대하여 필요이상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세일에 대한 규제도 해당된다. 즉,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나라의 流通業者들이 割引

特賣를 남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취해진 것들이지만, 경품의 액수 및 세일기간에 대한 규제를 통해 판촉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효과를 놓는다는 것이다. 美國側은 이 조치가 외국의 流通業者들의 새로운 시장진입을 억제한다는 점을 들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事業者團體들의 不公正行爲

DEC를 통하여 論議가 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로서 事業者團體들의 不公正行爲를 들 수가 있다. 즉, 현재 국내의 각 事業者團體들은 組合이나 協會의 성격을 띤 조직을 형성하여 組合員들이나 會員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조직들에 대한 가입이 新規 外國業者들에게는 장애가 있고 이러한 관행이나 제도가 외국업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차별효과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서비스협정의 내국민대우 조항에도 나와 있듯이 國內에 어떠한措置나 制度가 형식적으로 차별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차별효과를 가져올 경우 이를 차별적 조치로 간주하여 內國民待遇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는 내용에 합일하는 것이다.

(3) 國際契約申告制

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것으로 國際契約申告制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형식적으로는 申告制라고 하나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承認制로 작용하고 있어 시장진입에 장애가 된다고 하는 것이 미국측 주장의 내용이다. 一例로 기술도입의 경우 국제계약신고의 의무가 따르며 이때 어떠한 행정조치의 형태를 띠든 신고로서 끝나지 않고 관련담당부처의 승인이 있어야 技術導入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이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진입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된다는 주장이다.

4. 一般的인 對應의 原則

서비스란 一般產業에 대해서 infra-structure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모든 一般產業에 있어서 서비스가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市場開放은 전반적인 서비스의 量的·質的인 향상을 가져온다고 할 수가 있는 반면, 거대한 서비스시장의 규모를 고려해보면 그 만큼 서비스시장의 개방은 신중을 기해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다. 서비스 市場의 개방시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문제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고 할 수가 있다.

첫째, 각 서비스분야별로 國內產業의 競爭力を 감안하여야 한다. 국내의 관련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미비할 경우 이는 이 분야에 있어서의 무분별한 시장개방이 國內事業者들의 도태를 가져오고 나아가 이 분야의 國內產業發展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분야에 있어서 경쟁구조를 조정하여 완전개방시의 경쟁력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이와 병행하여 점진적인 시장개방을 이루는 것이다.

둘째, 一定分野의 서비스市場開放이 가져오는 구조적인 효과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해 이는 손익계산으로서 해당분야의 國內產業 競爭力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해당 서비스의 개방이 다른 일반산업이나 다른 서비스분야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가를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통신분야에 있어서 자료전송이나 부가가치서비스 즉 資料에 대한 편집이나 분석과정을 거친 정보의 전달 서비스 등의 市場開放은 國內事業者들의 競争력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이들을 이용하는 일반산업이나 타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격의 하락이나 발달된 기술의 양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즉, 이러한 방식의 市場開放은 關聯產業에게는 產業活動의 加速化 및 效率性 增大效果라는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셋째, 雇傭效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市場開放이 이루어지는 특정분야에 있어서 國내雇傭의 규모가 크고 市場開放으로 인하여 雇傭構造의 변화가 심하게 일어난다면 사전적인 정비가 이루어진 후에 개방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양허표상으로는 자연인의 주재에 대하여 극히 일부만을 讓許하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것이 특별한 문제가 아니지만 분야에 따라서는 시장개방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 문제에 있어서의 開放壓力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분야에 따라서는 雇傭의 創出效果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자연인의 주재에 관한 市場開放을 효과적으로 이루어가면 國내의 市場開放으로 인한 失業化率을 最小화할 수 있고 동시에 雇傭創出效果를 極大화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